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지 제38호서식] <개정 2021. 12. 31.>

우체국
요금후납

보내는 사람
□□□-□□□

받는 사람

행정우편

□□□-□□□

접는 선

년 호

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

주소:

교육기관의장:

출석요구일: 년 월 일

접는 선

「도로교통법」 제7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교육기관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시·도경찰청(교통관리계·민원실)으로 본 통지서,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, 도장을 가지고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처분내용: 교통안전 교육기관 (지정취소, 운영정지 00일)
처분사유:

※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일입니다.
※ 위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경찰청장 직인

안내전화: 담당자 ○○○

210㎜×297㎜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))